

부 록 I. 가용자본의 산출²⁸⁾

지급 여력 금액	· 합산항목(1) - 차감항목(2) + 자회사 자본부족(3)	
	생보사	손보사
(1) 합 산 항 목	기본 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누적적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5% 이내 •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보완 자본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 및 부채적정성평가 관련 추가적립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여기서 부채적정성평가로 추가 적립한 금액을 제외)
(2) 차감항목	보완 자본	• 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후순위채무액·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 15% 초과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완 자본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3) 자회사 자본부족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 내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종속기업인 사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기주식 포함),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3) 자회사 자본부족	•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본부족 금액 중 지분을 상당액 •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 순자산 부족 금액 중 지분을 상당액	

28) 금융감독원(2012a).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참조.

부 록 Ⅱ. 부채적정성평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²⁹⁾

제1장 총칙

-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6-11조의2, 제6-18조의3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I.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 1-3. (용어의 정의)
- 가. 현행추정 가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 나. 대표계약은 보유계약의 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되는 표본계약을 의미한다.
 - 다. 순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추정년도 별 현금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라. 기준금리는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 시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을 의미한다.
 - 마. 보유자산은 평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산을 의미한다.
 - 바. 신규자산은 보유자산의 만기, 이자 및 배당 등의 재원과 평가일 현재 보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순현금흐름을 재원으로 투자되는 운용자산을 의미한다.

2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6).

제2장 평가기준 일반론

2-1.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가.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에 의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8>에 따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보험종목은 제외한다.

나. 회사가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부채와 평가시점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2.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회계연도 말 현재의 보험계약(회계연도 말과 직전 분기 말 보유계약 간 중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 말의 보유계약 적용 가능)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유출액(옵션·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 포함)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한다.

2-3. (평가단위)

가. 배당 및 금리확정여부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종 및 유사 위험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분화된 단위는 매회계연도 별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중 <부표2. 보험의 종류>에서 정한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의 경우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 기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4. (상계단위 및 추가적립 계정)

가. 2-3의 평가단위에 따라 각 단위별 잉여·부족분에 대해 회사 전체수준에서 상계 할 수 있다(단,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 자동차보험 간 잉여·부족분을 상계할 수 없다.).

- 나. 평가결과 추가 적립분은 평가단위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 2-5. (평가시점)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분·반기 검토 시 현행추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말과 동일 수준으로 실시한다.
- 2-6. (문서화) 평가대상 단위별 잉여·부족액, 현행추정 가정의 세부산출내용과 직전평가시점 대비 가정의 변화수준과 변화근거, 가정의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금액의 변동,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등 회계처리 세부 내역을 문서화한다.

제3장 가정의 산출방법

3-1. (개요)

-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은 현행추정에 의해 산출한다.
- 나. 현행추정 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특성·규모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미래 추세 등을 반영한다.
- 다. 연령, 성별, 납입방법, 경과기간, 판매채널 등에 따른 차이가 중요한 경우 구분하여 산출한다.
- 라.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산출기준은 매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마. 영업개시 후 5년 이내 신설사의 경우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근에 판매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 바. 보험회사는 미래현금흐름 현행추정치 산출과 관련한 위험률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통계책임자 지정
- (2)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3) 통계담당자 자격요건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 (4) 통계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
- (5) 보험요율산출기관에의 통계제공 절차
- (6) 통계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 (7) 기타 통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2. (사업비율)

가. 회사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일시적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사업비율은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 신계약비는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유지비는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3. (해약률)

가. 회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계약건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준 중 회사실정 또는 상품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납입상태, 수당정책, 세제혜택기간, 시중금리동향, 계약부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해약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위험률)

가. 위험률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료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 대비 현행추정위험률로 산출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거나 보험상품의 위험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한다.

라. 회사경험통계에 관찰되지 않은 위험률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근에 판매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제4장 할인율 가정

4-1. (개요)

가. 미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 한다.

나.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은 회사의 과거 운용자산실적에 미래추세, 회사의 투자전략 등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4-2. (산출기준)

가. 할인율은 운용자산 분류, 기준금리 결정, 운용자산별 이익률 산출, 회사의 미래운용자산이익율 산출의 단계를 따른다.

나. 회사는 운용자산을 고정수익자산, 주식, 부동산, 해외투자자산, 기타자산 등 최소 5개로 구분하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되, 기타자산 중 총자산 대비 구성비가 5% 이상인 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다. 보유자산 중 고정수익자산 이익률은 해당 자산의 만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라. 신규자산 중 고정수익자산 이익률은 기준금리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1) 기준금리는 회사가 현행추정하거나, 감독원이 제시하는 아래 시나리오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1년·3년·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
 - －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1년·3년·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
- (2) 위험스프레드는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마. 고정수익자산 이외 자산의 이익률은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바. 회사전체 운용자산이익률은 보유자산과 신규자산의 자산별 운용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가시점의 자산 구성비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만, 투자전략 등의 명확한 변동이 있다면 자산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다.
- 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금액은 라.(1)에서 정한 회사의 현행 추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 시나리오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 시나리오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4-3.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의 최저한도)

- 가. 신규자산 전체의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을 위해 연도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가산되는 위험스프레드는 (1)의 값으로 한다. 다만, 미래 투자전략의 변경 등 그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2)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 (1) 회사의 위험스프레드: 최근 7개년 평균위험스프레드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

- － 최근 7개년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기준금리**]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은 ‘〈부표1〉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사용한다.

** 기준금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연도의 최근 5년간 국고채(5년만기)의 평균수익률

(2) 산업 위험스프레드: 가.(1)의 회사의 위험스프레드를 평가시점의 회사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감독원이 산출·제시한 값.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여 산출·제시

나. 4-2.사항의 금액은 다음 (1) 또는 (2)의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1) 4-2.라.(1)의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에 가항의 위험스프레드가 가산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Percentile(65) 해당액

(2) 4-2.라.(1)의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시나리오 중 Percentile(65) 연도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가항의 위험스프레드가 가산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장 기타사항

5-1. (대표계약의 검증)

가. 평가대상 보험계약 중 대표(표본)계약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산출할 경우 산출된 현금흐름의 대표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대표계약을 설정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대표계약으로 산출된 금액이 보고시점 말 기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의 금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전체계약에 대해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을지라도 가 내지 나항의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프로젝션 기간)

가.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의 산출과 동일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특정기간 (예를 들면 30년)까지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경우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프로젝션기간 말 잔존하는 계약은 모두 해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5-3. (감독원장의 시정요구) 감독원장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하고, 적정성 평가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